

서울남부지방법원 2017. 5. 16 선고 2017가단2704 판결 [소유권이전등록 및 구상금청구]

---

## 전 문

원고동일실업운수 주식회사

피고1. A

2. 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7. 5. 16.

## 주 문

1.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7. 2. 21.자 위 · 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.
2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,013,330원과 이에 대하여 2017. 2. 2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**판사**이은정

별지